

분 양 안 내 서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 산업 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서오창테크노밸리

목 차

I . 분양 일반사항	3P
II . 분양신청 안내	4P
III . 분양계약 체결	11P
IV . 분양대금 정산	12P
V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12P
VI . 준수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13P
* 불임 1. 사업지 위치도	P19
2. 토지이용계획도	P20
3. 가로망계획도	P21
4. 업종별 배치계획도	P22
5. 획지분할도	P23
6. 일반분양 대상 필지 세부내역	P24
7. 우선분양 대상 필지 세부내역	P26
8. 특정수질유해물질	P29
9. 특정대기유해물질	P30
10. 사업장분류기준(대기)	P31
11. 전력선 지중화 구간	P32
12. 제약사항(절성토, 암반 등)	P33
13. 공사계획평면도	P34
14. 위임장	P35
15.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P36

I. 분양 일반사항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성주시 고시 제2020-368호(2020.8.28), 제2020-501호(2020.12.1), 제2021-163호(2021.4.23))에 따른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를 다음과 같이 분양합니다.

◆ 분양 공고일 : 2021. 9. 6(월)

- 일 간 지 : 아시아경제
- 홈페이지 : (주)서오창테크노밸리(www.wotv21.co.kr)

◆ 분양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일반 공급	보증금 납부/서류제출	'21년 9월 6일(월) ~ 9월 17일(금)
	입주(서류)심사	'21년 9월 24일(금) ~ 9월 30일(목)
	추첨(경합필지)	'21년 10월 1일(금)
	계약체결	'21년 10월 5일(화) ~ 10월 6일(수)
우선 공급	계약체결	'21년 9월 9일(목) ~ 9월 15일(수)

◆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 일반공급대상에 한함)

- 납부금액 : 분양신청 필지수 × 500만원
- 납입계좌 : 기업은행 497-065519-04-062 (예금주 : (주)서오창테크노밸리)
※ 분양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 분양계약대상자 안내

- 일반공급 대상 : 공급 우선순위 및 추첨 등에 따라 선정('21.10.1(금))
- 우선공급 대상 : 입주협약 체결기업과 수의계약 진행

◆ 분양계약 체결

- 납부금액 : 총 분양대금의 2% ('계약금 1차'분)
- 납입계좌 : 기업은행 497-065519-04-062 (예금주 : (주)서오창테크노밸리)
☞ 필지별 분양금액 및 계약시 납부할 1차 계약금(2%)은 24~28p. 참조

※ 상기 일정은 분양신청 및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분양신청 안내

1. 분양 대상용지

공급방법	용지명	필지수	면적(m ²)	분양가격(원)	비 고
일반공급 대상	산업시설용지	29	251,340	338,939/m ² ~ 382,496/m ²	
	복합용지	6	50,003	386,241/m ² ~ 395,048/m ²	
우선공급 대상	산업시설용지	36	173,485	355,522/m ² ~ 378,367/m ²	입주협약 체결 기업
	복합용지	18	83,905	383,299/m ² ~ 413,971/m ²	

☞ 필지별 세부 분양가격은 24~28p. 참조

2. 분양가격 산정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내 산업시설에 대한 평균단가는 추정 조성원기를 기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6조를 준수하여 산정함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내 산업시설에 대한 분양가격은 전체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각 획지별 특성(진입도로 접근성, 접도면수, 면적규모, 토지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지수를 반영하여 산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하였으며, 복합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시설(산업시설용지 가격 결정방식)과 산업시설 외 시설(감정평가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

3. 입주대상 업종

구분	대상용지(블럭)	면적	입주가능업종	비율
산업 시설 용지	MT1 [메카트로닉스첨단]	74,869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8 전기장비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12.4%
	MT2 [메카트로닉스첨단]	206,141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34.1%
	BT1 [비아오]	73,145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M70 연구개발업 	12.1%
	BT2 [비아오]	58,572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M70 연구개발업 	9.7%
	제한업종1	41,868m ²	▪ 입주제한업종 : C10~C19, C23~24, C33~34, E37~39, J58~63	6.9%
	제한업종3	15,921m ²	▪ 입주제한 업종 : 제조업, E37~39	2.7%
복합 용지	MT3 [메카트로닉스첨단]	85,110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14.1%
	MT4 [메카트로닉스첨단]	20,848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3.4%
	제한업종2	27,950m ²	▪ 입주제한업종 : C10~C19, C23~24, C33~34, E37~39, J58~63	4.6%
<p>※ 입주제한 (불임8~10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공정상 악취 및 공해물질 과다배출로 주위환경과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 사업계획서상 당초 조사한 오폐수발생량보다 현격히 증가가 예상되는 업체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 1~2종 사업장 • 세부업종별 입주제한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참조 				

※ 공급대상토지의 업종 및 면적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4. 입주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복합용지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공급일정	장 소
일반공급 대상	서류접수/보증금 납부	9월 6일(월) ~ 9월 17일(금)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1층 (주)서오창테크
	입주(서류)심사	9월 24일(금) ~ 9월 30일(목)
	추첨(경합필지)	10월 1일(금)
	계약체결	10월 5일(화) ~ 10월 6일(수)
우선공급 대상	계약체결	9월 9일(목) ~ 9월 15일(수) 노밸리

- ※ 필지별 신청접수 및 분양심의를 실시하며 추첨결과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
- ※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시간 09:00~17:00 (단, 휴일 제외)
- ※ 분양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청주시)과 입주계약 체결 필수
- ※ 상기 공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 금회 공급대상토지 중 신청자가 없는 토지는 2021년 9월 24일(금)부터, 신청 후 미계약된 토지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7일(목)부터 별도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

6. 분양대상자 결정방법 및 우선순위

- 공급우선순위
 - (단독신청시) 신청자가 적격자인 경우 해당 신청자를 분양대상자로 선정
 - (경합시) 동일 필지에 2개 업체 이상의 분양신청이 접수되고 모두 적격대상자인 경우, 공급우선순위를 따르게 되며, 순위 내 동일 조건으로 경합 발생시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선정
 - (추첨)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며 추첨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
- ※ 참석 의무는 없으나 희망시 참관 가능

우선순위	자격요건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기업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방재정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체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필지(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분양신청 업체

○ 우선공급 대상 (입주협약 체결 업체)

- 청주시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업체의 경우 해당 신청자를 분양대상자로 선정

7. 분양 신청방법(일반공급에 한함)

절 차	내 용
① 업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내용에 맞는 업종 조회(업종코드 5자리) (※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참고)
② 희망블록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와 일치하고 면적이 적합한 희망블록 선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앞쪽 2자리)가 업종배치와 일치) <p>☞ 블록별 업종배치계획은 22p. 참조</p>
③ 분양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신청서,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 서오창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wotv21.co.kr))
④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 <u>2021. 9. 17 (금) 16:00까지</u> ▪ 납부금액 : 분양신청 필지수 × 500만원 ▪ 납부계좌 : <u>기업은행 497-065519-04-062</u> ((주)서오창테크노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신청자 명의로 입금(공동신청시 대표자 명의) - 입주 선정시 계약이행보증금은 1차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미반환)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금융기관 영업일 기준)부터 순차적으로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⑤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한 : <u>2021. 9. 17 (금) 17:00까지</u>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신청서(계약이행보증금 납입증명서 포함) - 분양신청유의서 -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 업체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p style="margin-top: 5px;">※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u>분양공고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 받은 원본</u>이어야 하며, 입주신청 후에는 신청사항 취소 및 서류반환 불가</p>
--------	---

- ※ 2개 이상의 동종업체가 1개 필지에 공동으로 분양 신청이 가능하며, 서로 연접한 필지로 다필지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합필하여 입주 가능
- ※ 앵커기업유치존 신청 희망시 당사와 사전협의 필수 [산업5-1~5-11, 6-1]

○ 유의사항

- 분양 신청시 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면적 단위는 블록내 분할된 1개 필지를 최소로 하며 복수필지 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동종업체가 공동으로 분양 신청 가능
- 서로 연접한 필지로 다필지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시 1개 필지로 합필하여 계약할 수 있음
- 분양 신청접수 기간 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포함한 분양신청 서류 모두를 접수하여야 신청이 유효함
- 분양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그 신청 내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대금 납부방법

○ 납부조건 (선납할인형)

-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할인율 적용하여 산정한 할인금액 적용 (※ 계약금 1차 및 잔금은 선납할인 미적용)

- 선납할인율 : 연 3.5% (※ 선납할인시 납부 최소 3영업일 전까지 당사와 협의필수)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시점	D	D+1M	D+5M	D+9M	D+13M	D+17M	D+21M	준공후
날짜	계약시	21.10.8	22.3.7	22.7.6	22.11.7	23.3.6	23.7.6	24.6.30
비율	2%	8%	14%	14%	14%	14%	14%	20%
설명	▪ 계약금(2차)~중도금(5차)을 약정일 보다 선납할 경우 용지매매계약서에서 정하는 할인율을 기준으로 각각 선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할인							

※ 납부일정은 당사 정책변경 또는 분양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납부조건2 (이자지원형, 우선공급업체만 해당)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시점	D	D+1M	D+4M	D+5M	D+12M	D+16M	준공후
날짜	계약시	21.10.8	22.1.10	22.2.8	22.9.8	23.1.9	24.6.30
비율	2%	8%	5%	20%	20%	25%	20%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총15%)를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2차~4차 중도금(총65%)에 대해 <u>2023.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0% 범위내 지원</u> ▪ 당사 사정(예상비용 초과 등)에 따라 정책 변경 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계약금(10%)을 포함 분양대금의 총 15% 이상을 납부 후, 잔여 분할 중도금의 전부(최대 65%, 2차~4차 중도금) 또는 일부를 중도금대출 협약은행 대출을 통해 납부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당사가 대납함
- 지원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는 지원 대상 매수자를 대신하여 당사가 우선 대납하고, 매수자는 본인 부담 중도금 대출이자(대납기간 중 대출금리 변동시 매번의 변동된 금리(월단위)를 기준으로 각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전액을 잔금 납부약정일에 당사로 일시(一時) 지급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이자 전액은 매수자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이자 지원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분양계약 중도 해제시 당사가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함
- 「납부조건1」과 「납부조건2」는 수분양자가 용지매매계약체결 전 선택할 수 있으며(계약체결 후 변경불가),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지연손해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취득세) 분양대금의 납부 기간(계약금~잔금)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분납금 납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제6조, 제1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입주계약 체결 후 연부취득 신고시 취득세 일부 감면
- 잔금납부 약정일에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경우 소유권이전 가능 시점까지 잔금납부기일 유예(지연이자 미발생)되며, 소유권이전 가능시점은 사업준공 승인 및 지적공부 정리 등 관련 절차가 예상기간 보다 더 소모될 경우 소유권이전 가능 시점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9. 중도금대출 협약은행

은행명	대표지점		
	지점명	연락처	주 소
기업은행	오창지점	043-217-1432(내선 310)	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로51-8(대웅프라자)
농협은행	충북본부	043-224-9650	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23
산업은행	오창지점	043-249-2433	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로47,2층(오창리치아노)
우리은행	서청주지점	043-271-3081(내선 510)	청주시흥덕구과성미로3
하나은행	오창지점	043-214-8652(내선 300)	청주시청원구중심상업로31-4

- 대출한도 : 분양대금의 최대 80%이내 (※각 은행별 대출정책에 따라 상이)
- 대출금리 : 각 은행별 심사후 결정
- 기타사항 :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세부조건은 각 은행별 정책과 신용도에 따라 각각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협의 바람

10.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납부)계약이행보증금(500만원×신청필지수)은 지정 계좌에 신청자 명의로 입금
 - 납부 후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 기한 (2021년 9월 17일(금) 16:00)이후의 입금은 무효처리 됨
- 타 금융기관에서 납부지정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이체를 완료하거나 지정계좌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 (입금지연에 따른 신청 무효 등의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반환) 입주선정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어 반환 되지 않음.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신청시 제출한 환불용 계좌

입금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주선정자 최종 확정일(2021년 10월 6일(수))로부터 7일이(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경과한 날(2021년 10월 19일(화))부터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반환계좌의 명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환불금 입금 계좌 번호 오류로 인한 환불금 지급 오류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귀속) 입주선정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당사가 임의로 계약해제 조치할 수 있고 이 때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III. 분양계약 체결

- 총 분양대금의 2%를 1차 계약금으로 사전 납부 후 분양계약 체결
※ 나머지 2차 계약금(분양대금의 8%)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서 용지매매계약서에서 표시된 약정일에 납부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리기관(청주시)과 입주계약 체결 필수

- 절차 및 방법

절 차	내 용
① 계약금(1차)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 전 1차 계약금(2%)를 납부- 납부계좌 : <u>기업은행 497-065519-04-062</u> ((주)서오창테크노밸리)
②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결기간 : <u>2021. 9. 9(목) 09:00 ~ 9. 15(수) 17:00 [우선공급]</u> <u>2021.10. 5(화) 09:00 ~ 10. 6(수) 17:00 [일반공급]</u>▪ 장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1층 ((주)서오창테크노밸리)▪ 서류준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계약금 납입증명서-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인지세 납부용 전자수입인지

IV. 분양대금 정산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및 조성원가 확정에 따른 가격 정산

1. 면적 정산

- 분양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결과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의 분양가격(분양단가)을 기준으로 면적정산기준일을 정하여 면적정산을 실시

2. 가격 정산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내 산업시설에 대한 평균단가는 추정 조성원가와 적정 이윤(「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6조」) 범위내 기준으로 산정된 잠정 가격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이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종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에 따라 공급가격 정산

V.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가능 예상시점(공장 착공 가능시점)은 2024년 1월 예정이며, 사업준공 및 소유권 이전은 2024년 하반기 예정이나, 예상일정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사용가능시점은 공장착공 가능 시점으로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하며 토지사용가능 시기 이후라도 단지 내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수인해야 함

1. 토지사용 승낙

- 소유권이전 이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사용승낙(협약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승낙 등)을 통해 토지사용이 가능
 - 용지매매계약서 상 토지사용가능 시점 이후 분양대금 완납 후 중도금대출 은행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사에 토지사용승낙 신청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잔금납부 전 중도금대출 은행에 토지사용에 대해 사전협의 바람

- 산업단지 준공전 토지사용승낙은 전력, 통신,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함을 수분양자가 수인하는 조건으로 조기 공장 착공업체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하는 것이며, 조성사업 진행에 따라 토지사용가능 시점이 변동될 수 있음

○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 (제약사항 확인) 토지사용자는 기반시설 및 단지 부지 조성계획 도면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상태를 감안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함
- (제세공과금) 분양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이후 또는 사용 승낙된 용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분양받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관리책임) 토지사용 승낙 이후 입주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분양토지 내에 문제발생 및 시설물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토지사용자의 책임임
- (기반시설) 분양용지 내 대외 기반시설(전기, 통신 등) 인입은 신청자(입주자)가 개별 공급자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토지사용시점의 지연) 국유림 교환과 관련한 위치에 있는 아래 블록의 토지 사용가능 시점은 2024년 6월 1일 이후로 지연될 수 있음
 - 산업시설용지 : 5-7, 5-8, 5-9, 5-10, 5-11, 8-1, 8-2, 8-3, 15-1, 15-2, 15-3
 - 복합용지 : 1-3, 1-4, 1-5, 1-6, 1-11, 2-1, 2-2, 2-3

2. 소유권 이전

-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완료 후 가능
 - 사업준공 후 지적공부정리 완료시 대금완납 블록에 대해 시행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함
- ※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시기는 2024년 하반기 이후이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VI. 준수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 분양토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복합)용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서오창테크노밸리 관리기본 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1. 처분제한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의 신고 포함)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함(산집법 제39조제1항, 시행령 제49조제7항)

- 단, 관리기관(청주시)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양수인 선정시 제조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음

2.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산집법 제42조 외)

- 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소정기한(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입주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신고전에 처분한 때
-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주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되거나 환경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추후 재확인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 분양대금을 완납 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

3. 준수사항

-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할 수 있음
-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은 임대 불가(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 계약 체결 필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후 임대 가능 면적 등 세부사항에 대해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오창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임대하여야 함(산집법 제38조의2에 의거)
- 필지분할은 산집법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면적기준은 900㎡ 이상(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확인)

4.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고문 및 제반자료 등 용지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분양신청 유의사항 등을 분양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오폐수처리기본계획 및 환경보전방안 협의 및 변경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주차장, 학교보건 등에 관한 관련법규,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 정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신청서 또는 승인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을 열람(전자관보, 청주시, 사업시행자, 해당기관의 고시공고 등 참조)하셔야 하며 필요시 사업시행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계획 또는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연약지반, 법면상태,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면도,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공급토지 제약사항]

- 단지는 남쪽이 높고 북쪽으로 낮아지는 경사가 있는 지형으로 토목공사시 절토구역과 성토구역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성토지역은 비다짐으로 설계되어 있고 절토 구역에는 암 발생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매도인이 제공하는 공사계획평면도,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공급토지의 법면(비탈면), 옹벽, 내부경사, 암반, 연약지반, 절성토, 인접도로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 내 생활용수 및 오·우수의 관로와 분기관, 옹벽(※ 옹벽(보강토 등)은 높이 5m마다 1.5m~2m 너비의 소단이 발생) 그리드 등 옹벽기초 설치에 따라 건축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용지 내에 매도인이 설치한 옹벽 등 구조물은 목적용지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수자의 소유로 하며 소유권 이전 이후에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 외부에는 고속도로, 취락지구, 골프장, 축사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으며, 해당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청약자 또는 수분양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틸리티]

- 오폐수배출예상량이 오폐수처리기본계획상 계획용량을 초과하는 등 오폐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하여야하거나 오폐수처리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평균계획용량 이상을 배출하는 매수자에게 해당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는 현재까지 별도의 공급계획이 없으며 필요시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개별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축 관련 사항]

- 입주기업은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9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 또는 기준건축면적률(비제조업)을 준수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 서오창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단지 생태면적률 목표기준 달성을 위해 대지 내 최소 조경비율 3.9%를 준수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 건축설계시 서오창테크노밸리 에너지사용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취득세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 세제 관련 사항은 자자체별 운영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산업단지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사업과정에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토지사용시기, 소유권이전시기 포함)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면적 및 형상 등의 토지이용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업 10-7은 향후 변전소 등 전기공급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제약사항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집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오수, 상수 등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순연될 수 있으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로, 공원, 상 · 하수도, 전기, 통신의 공사 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수도, 전기 등 원활한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반시설 사업자에게 분양계약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용가능 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추정되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이후 공급 토지 내 발생되는 일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업체가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시 발생되는 사업장폐수는 별도 고시되는 배출 허용 기준 이상일 경우에 사업장에서 1차 처리후 단지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 최종잔금 납부약정시점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시점 도래 전에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이나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금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완납시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수자는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미납 또는 납부지연 시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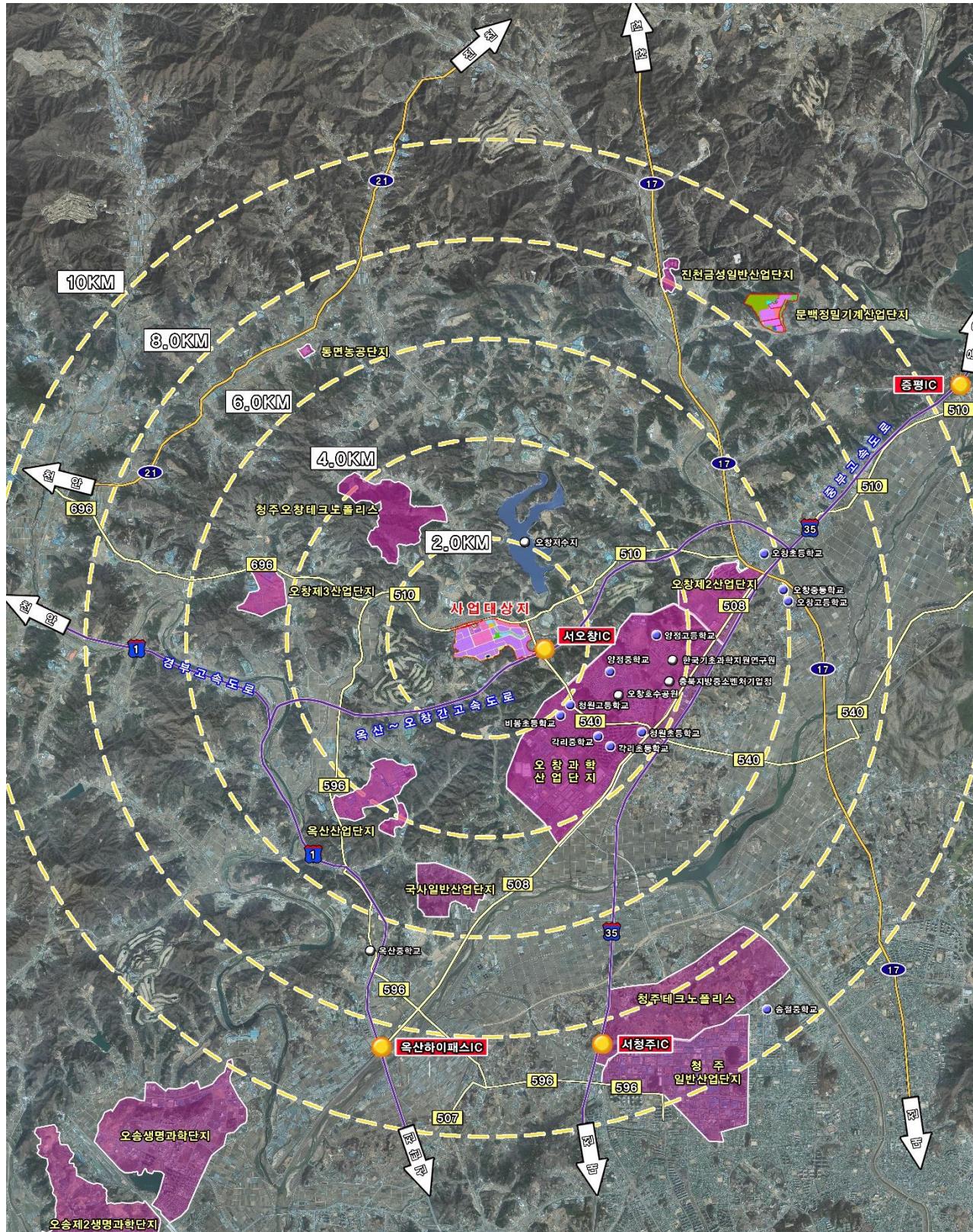
* 인지세액 예시

- 분양가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분양가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 신청 필지 중 각 분양필지 사이에 법면이 위치한 경우 법면의 아래쪽 지점 기준으로 필지경계가 나뉘어지며, 해당 법면은 분양면적에 포함됩니다. (※ 단, 공공시설(도로, 녹지 등)과 연접한 경우에는 법면 위쪽이 경계일 수 있으므로 관련 도면 확인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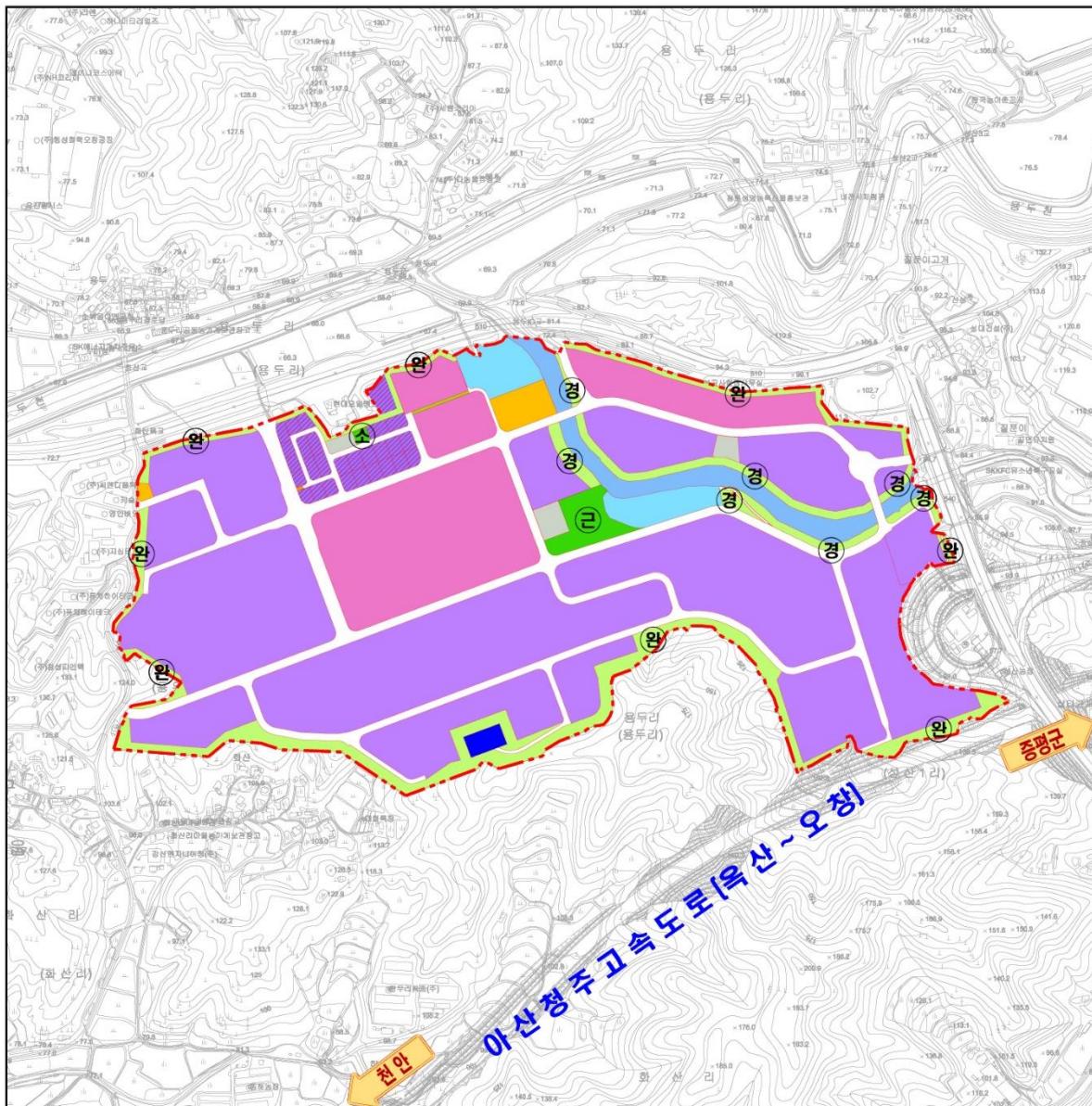
불임1.

사업지 위치도



붙임2.

토지이용계획도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범례

구역계	(원) 원충녹지	공공공지
산업시설용지	(경) 경관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복합용지	배수지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소하천	도로
(��) 근린공원	저류지	
(소) 소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Scale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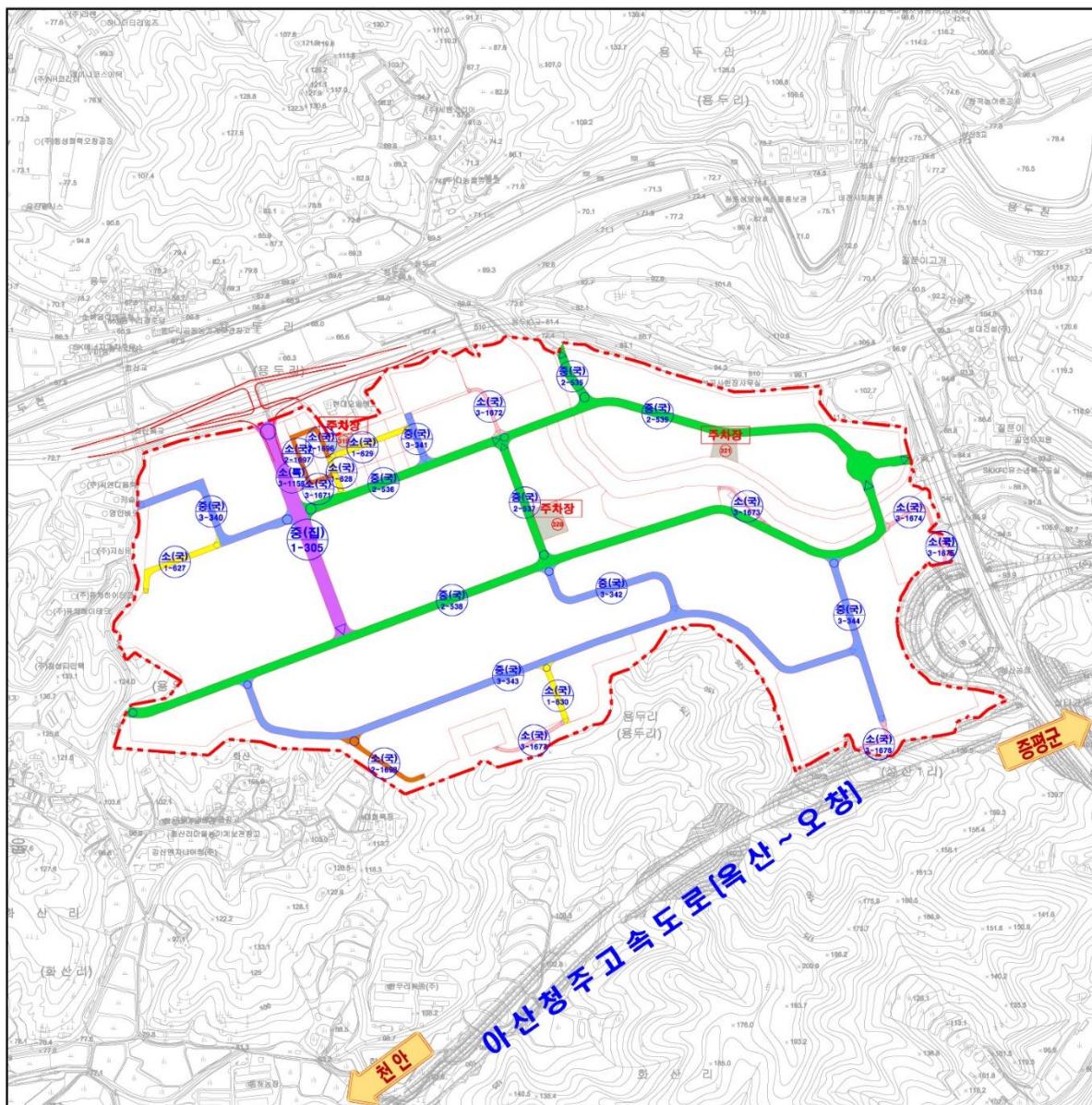
0m 100m 200m 400m 800m



※ 상위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진행 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3.

가로망 계획도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가로망 계획도

범례

	구역계		중로3류		소로3류
	중로1류		소로1류		주차장
	중로2류		소로2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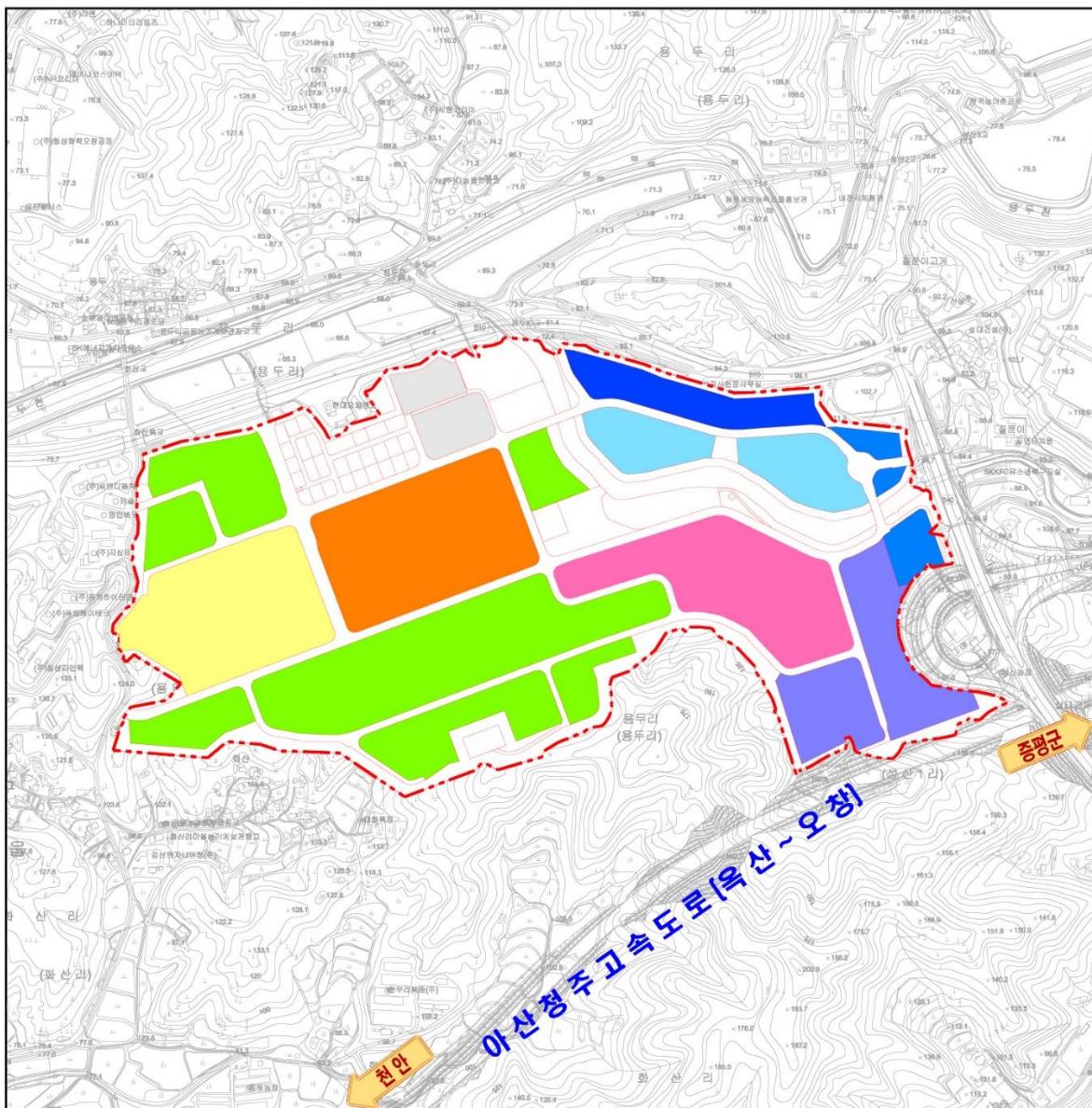
Scale : None
0m 100m 200m 400m 800m



※ 상위 가로망계획은 사업진행 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4.

업종별 배치계획도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업종 배치 계획 도

범례

 	구역	 	MT4 [메카트로닉스첨단]
 	MT1 [메카트로닉스첨단]	 	BT1 [바이오]
 	MT2 [메카트로닉스첨단]	 	BT2 [바이오]
 	MT3 [메카트로닉스첨단]		
 	제한업종1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한업종2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한업종3 [제조업, E37, E38, E39 제외]		



Scale : None

0m 100m 200m 400m 800m

※ 상위 업종별 배치계획은 사업진행 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불임5.

획지분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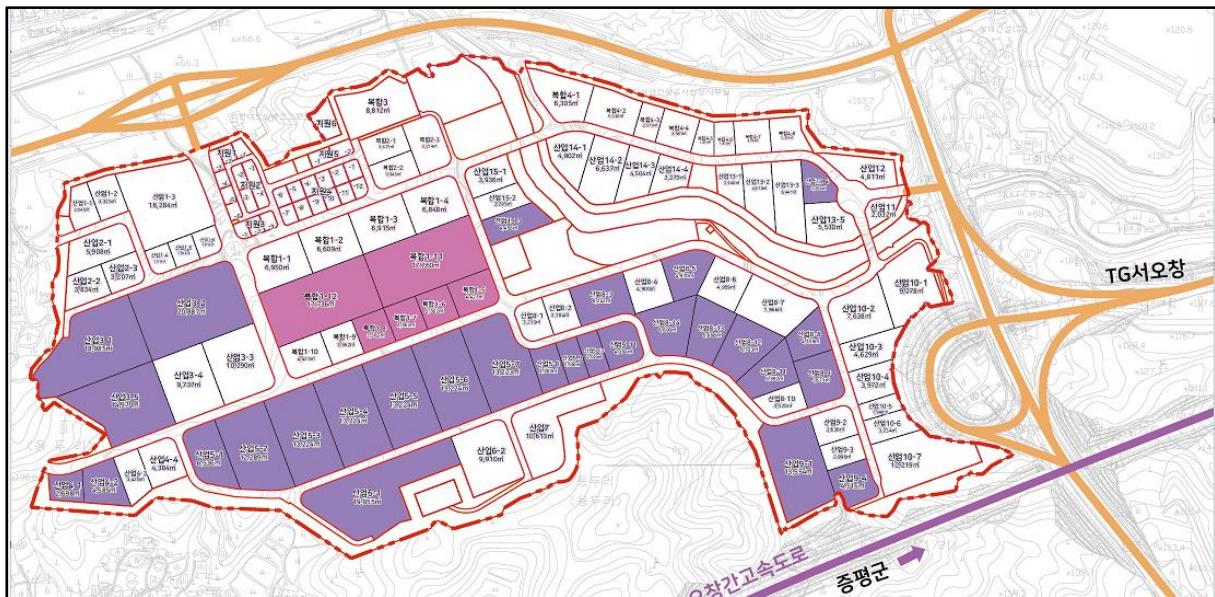


※ 상위 흐지분할도는 사업진행 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6.

일반분양 대상 필지 세부내역

1. 위치도



2. 산업시설용지

(단위 : 원)

블록번호	면적		단가		분양금액(원)	1차 계약금(2%)
	m ²	평	원/m ²	원/평		
산업 3-1	18,985	5,743	357,240	1,180,959	6,782,201,000	135,644,020
산업 3-2	20,887	6,318	382,496	1,264,450	7,989,193,000	159,783,860
산업 3-5	14,970	4,528	350,847	1,159,825	5,252,179,000	105,043,580
산업 4-1	2,698	816	373,346	1,234,202	1,007,287,000	20,145,740
산업 4-2	4,585	1,387	368,221	1,217,260	1,688,293,000	33,765,860
산업 5-1	6,536	1,977	360,535	1,191,851		
산업 5-2	12,289	3,717	361,633	1,195,481		
산업 5-3	13,224	4,000	365,659	1,208,790		
산업 5-4	13,224	4,000	366,757	1,212,420		
산업 5-5	13,224	4,000	366,757	1,212,420		
산업 5-6	13,224	4,000	366,757	1,212,420		
산업 5-7	13,223	4,000	357,972	1,183,379		
산업 5-8	3,380	1,022	356,508	1,178,539		
산업 5-9	2,590	783	369,685	1,222,099		
산업 5-10	2,590	783	370,051	1,223,309		
					42,420,304,000	848,406,080

산업 5-11	4,368	1,321	370,051	1,223,309		
산업 6-1	19,955	6,036	338,939	1,120,460		
산업 8-3	6,242	1,888	366,025	1,210,000	2,284,728,000	45,694,560
산업 8-5	4,970	1,503	364,195	1,203,950	1,810,049,000	36,200,980
산업 8-8	4,109	1,243	356,508	1,178,539	3,581,025,000	71,620,500
산업 8-9	5,613	1,698	377,006	1,246,301		
산업 8-11	5,392	1,631	360,901	1,193,061	1,945,978,000	38,919,560
산업 8-12	6,793	2,055	357,606	1,182,169	2,429,217,000	48,584,340
산업 8-13	5,886	1,781	358,705	1,185,802	2,111,337,000	42,226,740
산업 8-14	6,600	1,997	359,071	1,187,012	2,369,868,000	47,397,360
산업 9-1	13,554	4,100	363,097	1,200,321	4,921,416,000	98,428,320
산업 9-4	4,515	1,366	364,195	1,203,950	1,644,340,000	32,886,800
산업 13-4	3,256	985	369,319	1,220,889	1,202,502,000	24,050,040
산업 15-3	4,458	1,349	368,587	1,218,469	1,643,160,000	32,863,200

3. 복합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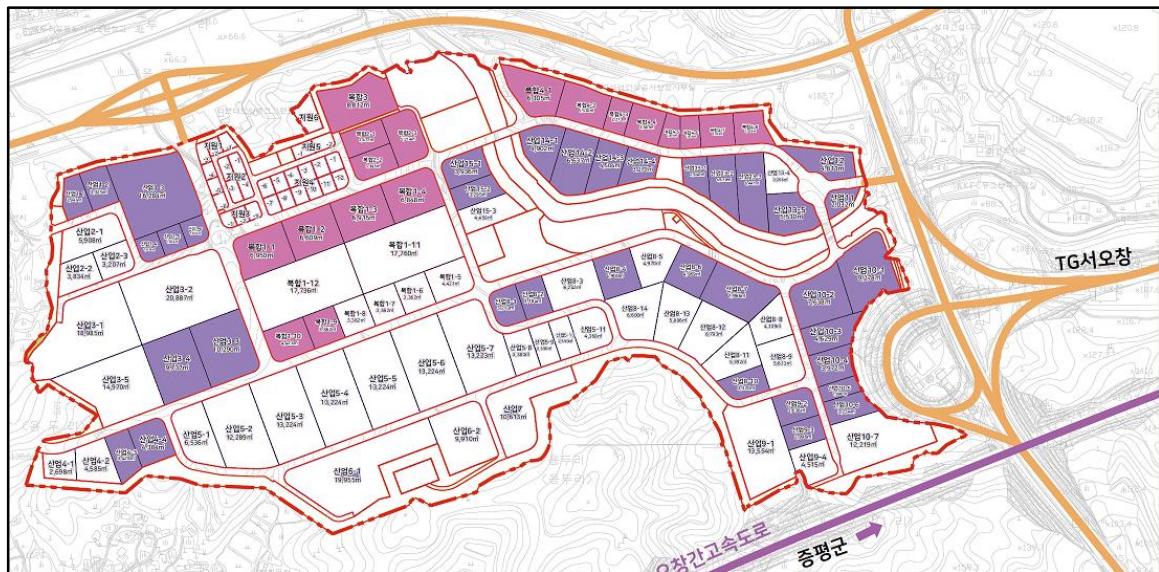
블록번호	면적		단가		분양금액(원)	1차 계약금(2%)
	m ²	평	원/m ²	원/평		
복합 1-5	4,421	1,337	391,901	1,295,540	1,732,594,000	34,651,880
복합 1-6	3,362	1,017	386,241	1,276,830	1,298,542,000	25,970,840
복합 1-7	3,362	1,017	386,607	1,278,040	1,299,772,000	25,995,440
복합 1-11	17,760	5,372	387,218	1,280,060	6,876,991,000	137,539,820
복합 1-8	3,362	1,017	387,522	1,281,064	1,302,848,000	26,056,960
복합 1-12	17,736	5,365	395,048	1,305,944	7,006,571,000	140,131,420

※ 상기 산업시설(복합)용지 중 분양금액이 합쳐진 필지의 경우 분양 신청시 사전 협의 요망

붙임7.

우선공급 대상 필지 세부내역

1. 위치도



2. 산업시설용지

블록번호	면적		단가		분양금액(원)	1차 계약금 (2%)
	m ²	평	원/m ²	원/평		
산업 1-1	2,945	891	361,590	1,195,339	1,064,882,000	21,297,640
산업 1-2	3,325	1,006	363,018	1,200,060	1,207,034,000	24,140,680
산업 1-3	16,284	4,926	378,367	1,250,800	6,161,328,000	123,226,560
산업 1-4	1,818	550	363,375	1,201,240	660,615,000	13,212,300
산업 1-5	1,874	567	355,522	1,175,279	666,248,000	13,324,960
산업 1-6	1,812	548	365,874	1,209,501	662,963,000	13,259,260
산업 3-3	10,290	3,113	370,157	1,223,660	3,808,915,000	76,178,300
산업 3-4	9,737	2,945	361,590	1,195,339	3,520,801,000	70,416,020
산업 4-3	3,428	1,037	362,304	1,197,699	1,241,978,000	24,839,560
산업 4-4	4,384	1,326	372,299	1,230,740	1,632,158,000	32,643,160
산업 8-1	3,210	971	369,086	1,220,119	1,184,766,000	23,695,320
산업 8-2	3,184	963	366,945	1,213,041	1,168,352,000	23,367,040
산업 8-4	4,900	1,482	366,588	1,211,861	1,796,281,000	35,925,620
산업 8-6	4,959	1,500	364,803	1,205,960	1,809,058,000	36,181,160
산업 8-7	7,966	2,410	357,307	1,181,180	2,846,307,000	56,926,140
산업 8-10	3,320	1,004	356,950	1,180,000	1,185,074,000	23,701,480

산업 9-2	3,636	1,100	372,299	1,230,740	1,353,679,000	27,073,580
산업 9-3	2,996	906	368,729	1,218,939	1,104,712,000	22,094,240
산업 10-1	9,278	2,807	356,236	1,177,640	3,305,157,000	66,103,140
산업 10-2	7,638	2,310	366,231	1,210,681	2,797,272,000	55,945,440
산업 10-3	4,629	1,400	358,378	1,184,721	1,658,931,000	33,178,620
산업 10-4	3,972	1,202	363,018	1,200,060	1,441,907,000	28,838,140
산업 10-5	1,980	599	358,378	1,184,721	709,588,000	14,191,760
산업 10-6	3,234	978	361,947	1,196,519	1,170,536,000	23,410,720
산업 11	2,032	615	363,018	1,200,060	737,652,000	14,753,040
산업 12	4,811	1,455	358,378	1,184,721	1,724,156,000	34,483,120
산업 13-1	2,640	799	364,089	1,203,600	961,194,000	19,223,880
산업 13-2	4,679	1,415	363,018	1,200,060	1,698,561,000	33,971,220
산업 13-3	6,441	1,948	361,233	1,194,159	2,326,701,000	46,534,020
산업 13-5	5,530	1,673	361,233	1,194,159	1,997,618,000	39,952,360
산업 14-1	4,902	1,483	359,092	1,187,081	1,760,268,000	35,205,360
산업 14-2	6,637	2,008	366,945	1,213,041	2,435,413,000	48,708,260
산업 14-3	4,504	1,362	362,661	1,198,879	1,633,425,000	32,668,500
산업 14-4	3,279	992	364,089	1,203,600	1,193,847,000	23,876,940
산업 15-1	3,936	1,191	356,236	1,177,640	1,402,144,000	28,042,880
산업 15-2	3,295	997	361,947	1,196,519	1,192,615,000	23,852,300

2. 복합용지

블록번호	면적		단가		분양금액(원)	1차 계약금(2%)
	m ²	평	원/m ²	원/평		
복합 1-1	6,950	2,102	413,971	1,368,499	2,877,098,000	57,541,960
복합 1-2	6,609	1,999	399,795	1,321,636	2,642,245,000	52,844,900
복합 1-3	6,915	2,092	398,724	1,318,096	2,757,176,000	55,143,520
복합 1-4	6,848	2,072	404,115	1,335,917	2,767,379,000	55,347,580
복합 1-9	3,362	1,017	383,299	1,267,104	1,288,651,000	25,773,020
복합 1-10	4,423	1,338	396,261	1,309,954	1,752,662,000	35,053,240
복합 2-1	3,477	1,052	395,118	1,306,175	1,373,825,000	27,476,500
복합 2-2	3,345	1,012	409,649	1,354,212	1,370,275,000	27,405,500
복합 2-3	5,214	1,577	406,258	1,343,002	2,118,229,000	42,364,580
복합 3	8,812	2,666	394,761	1,304,995	3,478,633,000	69,572,660

복합 4-1	6,305	1,907	394,618	1,304,522	2,488,066,000	49,761,320
복합 4-2	5,330	1,612	398,010	1,315,736	2,121,393,000	42,427,860
복합 4-3	2,273	688	400,331	1,323,408	909,952,000	18,199,040
복합 4-4	3,587	1,085	400,331	1,323,408	1,435,987,000	28,719,740
복합 4-5	1,854	561	399,795	1,321,636	741,219,000	14,824,380
복합 4-6	1,936	586	399,795	1,321,636	774,003,000	15,480,060
복합 4-7	3,326	1,006	399,795	1,321,636	1,329,718,000	26,594,360
복합 4-8	3,339	1,010	393,369	1,300,393	1,313,459,000	26,269,180

붙임8.**특정수질유해물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플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품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자린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불임10.**사업장 분류기준(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6.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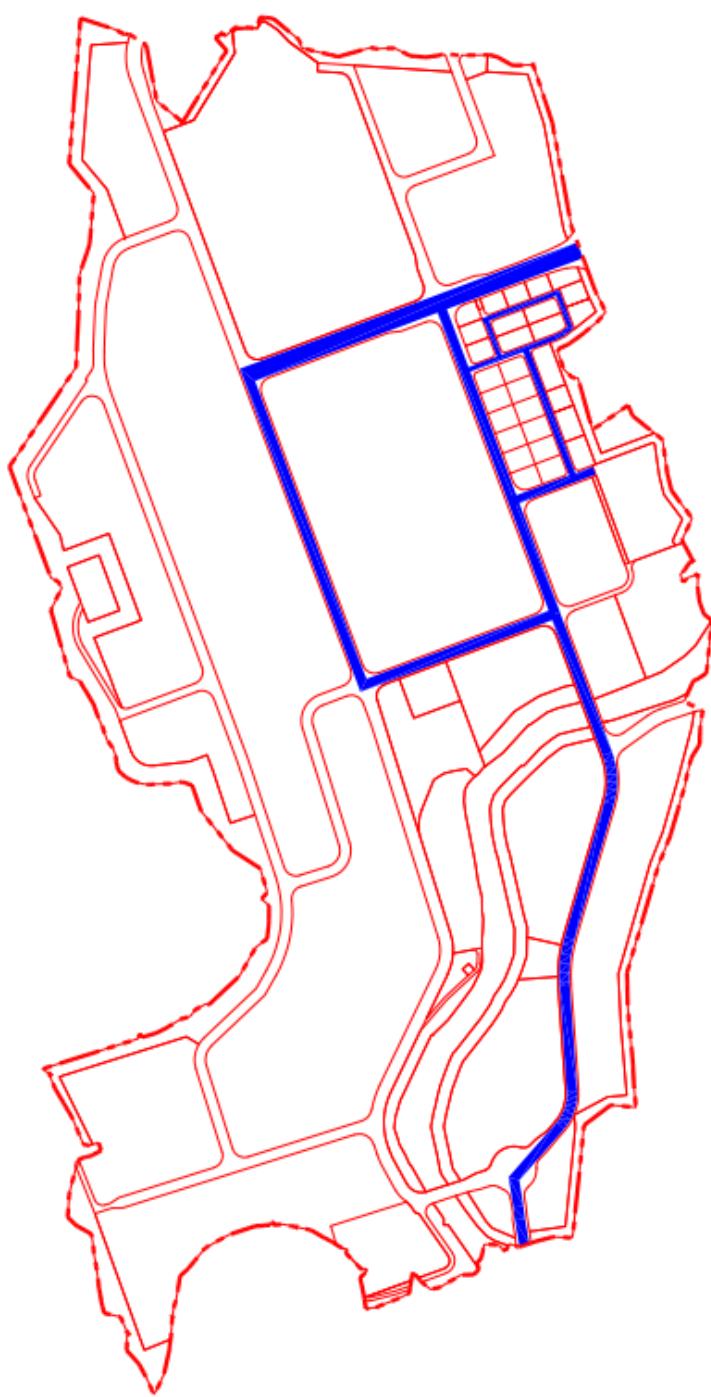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불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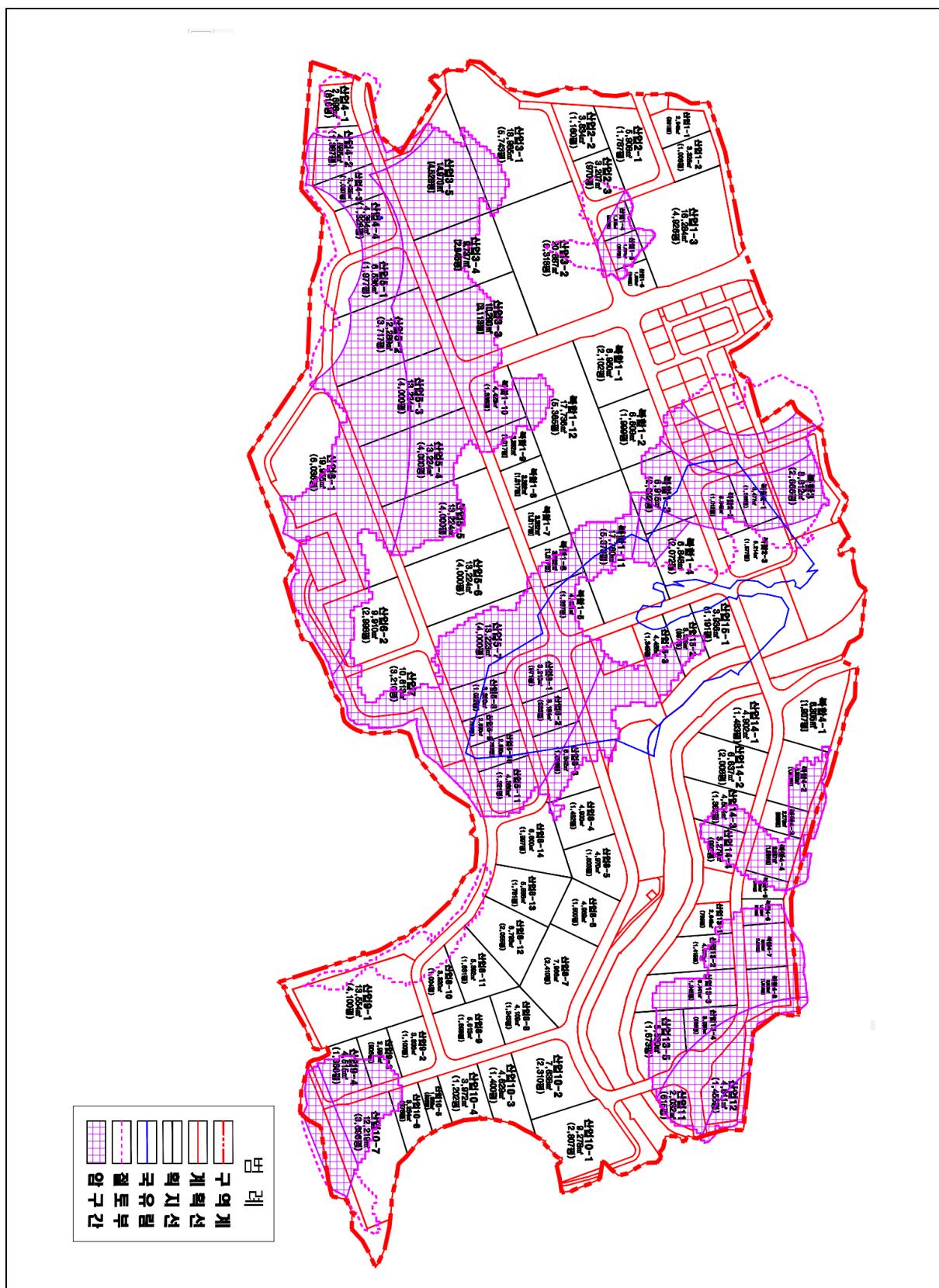
전력선 지중화 구간



※ 위 지중화 구간 외 구간은 지상선으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한국전력공사의 계획변경시
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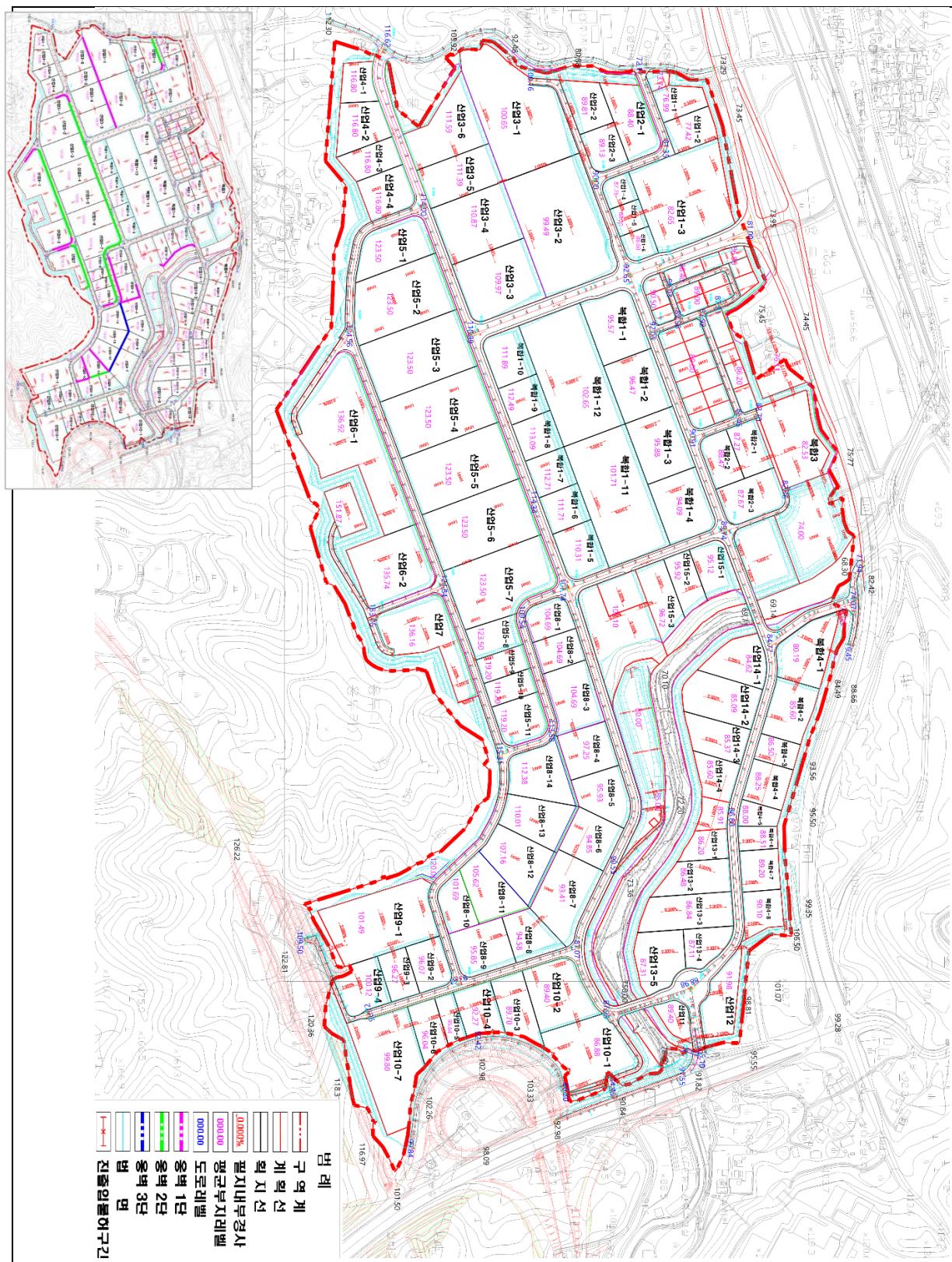
붙임12.

제약사항 (절성토, 암반 등)



불임13.

공사계획 평면도



- ※ 공사계획면도가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 당사 사무소 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또한 당사 웹하드에서 캐드도면을 다운로드 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웹하드(www.onlywebhard.co.kr ID:wotv21 pw:1234)

붙임14.

위 임 장

위 임 장

(분양계약 체결 위임용)

수임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인과의 관계	

위임내용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시설(복합)용지 분양계약 체결
------	-----------------------------

2021년 월 일

위임인 (본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붙임 : 본인(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신분증 사본 각 1부

(주)서오창테크노밸리 대표이사 귀하

제363호

청 주 시 보

2021. 6. 11.(금)

■ 청주시 공고 제2021 - 1915호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0-368호(2020.08.28.), 제2020-501호(2020.12.11.), 제2021-15호(2021.01.08.), 제2021-163호(2021.04.23)로 승인된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청 주 시 장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명 칭 : 서오창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산53번지 일원

다. 면 적 : 903,578m²

라. 관리기관 : 청주시장

마. 조성목적

- 본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효지역(오창테크노폴리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배후단지로서 기능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옥산~오창간고속도로, KTX고속철도 등 광역교통망 형성에 따른 개발 잠재력을 수용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

- 산업시설의 점적인 난개발을 지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화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여

바. 추진경위

- 2020. 08. 28.: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0-368호)
- 2020. 12. 11.: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0-501호)
- 2021. 01. 08.: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토지 세목(정정)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0-501호)
- 2021. 04. 23.: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1-163호)

사. 분양계획 및 현황

(단위:m²)

구 분	총 면적	분양 가능 면적					개 발 기 간	시행 기 관		
		계	분양	미분양						
				소계	조성	조성중				
계	903,578	903,578	-	633,489	-	633,489				
산 업 시 설 구 역	470,516	470,516	-	470,516	-	470,516				
복 합 구 역	133,908	133,908	-	133,908	-	133,908	2018년~ 2022년	주서오창 테크노밸리		
지 원 시 설 구 역	22,990	22,990	-	22,990	-	22,990				
공 공 시 설 구 역	173,977	173,977	-	6,075	-	6,075				
독 지 구 역	102,187	102,187	-	-	-	-				

아. 입주현황

(단위 : 개소,m²)

구 分	입주업체 수			면 적		
	제 조업	지원시설	계	제 조업	지원시설	계
계	73	29	102	604,424	22,990	627,414
'21년 04월 현재	0	0	0	0	0	0
향후 계획	73	29	102	604,424	22,990	627,414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 입지여건

시 설 명	주요시설내용	비고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서오창IC 인접 ■ 국도 및 지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 510호선, 지방도 540호선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철 오송역 약 13km, 충북선 청주역 9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국제공항 약 8km 	
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수 : 2,131.0m³/일 ■ 생활용수 : 305.8m³/일 	청주시 광역정수장에서 오창산업단지까지 공급 되는 송수관로에서 분기 하여 사업지구까지 송수 관로 매설 후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202,613MWH/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용지 : 141,340MWH/년 • 기타 시설 : 61,273MWH/년 	한국 전력공사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계폐기물 : 청주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처리 (폐기물발생량 : 212.50톤/년) ■ 사업장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폐기물발생량 : 18,834.0톤/년) 	산업단지 외부에서 처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량 : 910.0m³/일 ■ 오수량 : 283.7m³/일 	산업시설,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단지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2. 관리기본방향

- 가.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수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효율적 관리
- 나. 입주기업체를 위한 시장 정보제공, 에너지 공급, 노사관계증진, 직업 훈련 등 사업지원
- 다. 단지내 시설의 경비, 환경오염의 방지, 산업재해예방 및 기타 산업 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

3. 입주관리계획

가. 입주대상업종

구분	업 종	
산업 시설 구역	MT1 (메카트로닉스 첨단)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T2 (메카트로닉스 첨단)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BT1 (바이오)	M70 연구개발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BT2 (바이오)	M70 연구개발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제한업종1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3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외
	제한업종3	제조업, E37, E38, E39 제외

구분	업 종
복합 구역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MT3 (메카트로닉스) 첨단)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T4 (메카트로닉스) 첨단)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2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외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업종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 제한업종구역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

구분	업 종
제한업종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고무제품(221)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태양력 발전업(35114)에 한함)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여객 운송업종 제외)
	H50 수상 운송업 (여객 운송업종 제외)
	H51 항공 운송업 (여객 운송업종 제외)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K64 금융업 (신탁업에 한함)
	L68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에 한함)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한함)
	N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안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 포장 및 충전에 한함)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한함)
	P85 교육 서비스업 (대학, 직원훈련기관, 기술/직업 훈련학원에 한함)
제한업종 (제조업, E37, E38, E39 제외)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태양력 발전업(35114)에 한함)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여객 운송업종 제외)
	H50 수상 운송업 (여객 운송업종 제외)
	H51 항공 운송업 (여객 운송업종 제외)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0 방송업
	J61 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K64 금융업 (신탁업에 한함)
	L68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에 한함)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한함)
	N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안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 포장 및 충전에 한함)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한함)
	P85 교육 서비스업 (대학, 직원훈련기관, 기술/직업 훈련학원에 한함)

나. 입주제한업종 및 제한사항

- 1)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업종 및 공해물질 과다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 2)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용지 취득(분양, 매매, 경매)전 관리기관에 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 3)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시 사업계획서상에 당초 조사했던 오·폐수발생량보다 현격히 증가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감안,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 4)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 1~2종 사업장 입주제한

다. 입주자격

1) 산업시설구역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자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2) 복합구역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자
- 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3) 지원시설구역

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공공시설구역

가) 관련 법령(주차장법) 및 청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입주 우선순위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기업
- 2)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방재정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체

마. 입주절차

- 1)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4.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면적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903,578	100.0	
산업시설구역	470,516	52.1	일반분양
복합구역	133,908	14.8	일반분양
지원시설구역	22,990	2.5	일반분양
공공시설구역	173,977	19.3	
도로	106,332	11.8	청주시관리
주차장	6,075	0.7	일반분양
배수지	2,800	0.3	청주시관리
소하천	28,838	3.2	청주시관리
저류지	21,460	2.4	청주시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7,918	0.8	청주시관리
공공공지	554	0.1	청주시관리
녹지구역	102,187	11.3	
근린공원	10,032	1.1	청주시관리
소공원	662	0.1	청주시관리
완충녹지	69,237	7.6	청주시관리
경관녹지	22,256	2.5	청주시관리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허용하는 건축물

2) 복합구역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허용하는 건축물(산업시설의 연면적은 복합구역 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함)

3) 지원시설구역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허용하는 건축물

- 나)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와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4) 공공시설구역
 - 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의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건축물
 - 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허용하는 시설 및 건축물
- 5) 녹지시설구역
 - 나)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다. 용도별 구역평면도 : 불임#1

5. 업종별 공장의 배치계획

가. 배치기준

- 1)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2)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 3)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관리권자로부터 승인취득)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의거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가능
- 5) 복합구역내 산업시설면적은 연면적 기준 50% 이상 배치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해당되거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구분	업종	면적 (m ²)	구성비 (%)	
	합계	604,424	100.0	
산업시설구역	MT1 (메카트로닉 스첨단)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74,869	12.4
	MT2 (메카트로닉 스첨단)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206,141	34.1
	BT1 (바이오)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70 연구개발업	73,145	12.1
	BT2 (바이오)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58,572	9.7
	제한업종1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외	41,868	6.9
	제한업종3	제조업, E37, E38, E39 제외	15,921	2.7
	MT3 (메카트로닉 스첨단)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85,110	14.1
	MT4 (메카트로닉 스첨단)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20,848	3.4
	제한업종2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외	27,950	4.6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업종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2**6.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본방향**

- 1) 공공 및 지원기관 등 입주유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
- 2) 지원시설 부지는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 중점

나. 시설설치 계획

- 1) 기존시설 : 없음
- 2) 지원시설용지 입주수요에 따라 향후 결정 예정

7. 사후관리계획**가. 목표**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합리적 효율적 관리
- 2)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 관리

나. 세부관리계획

- 1)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2)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의 신고 포함)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함. 다만, 관리기간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양수인 선정 시 제조업체를 우선하여 선정 할 수 있음
- 3)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등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

는 당해 용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4)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 복합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00m²이상으로 함

다. 환경관리

-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폐기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2)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계획방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단지 내 저류지로 1차 방류 후 기존 하천으로 최종방류도록 계획
-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증설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라. 안전관리

- 1)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인근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2)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기반시설 지원

- 1) 산업단지내 도로, 공원·녹지, 전력, 용수, 에너지, 폐기물 등 기반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 가)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 등 신속한 업무처리
- 나) 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 신속히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

2) 생산활동지원

- 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나)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3)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 가)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알선창구 운영
- 나) 공원시설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시 활용 지원

4) 기타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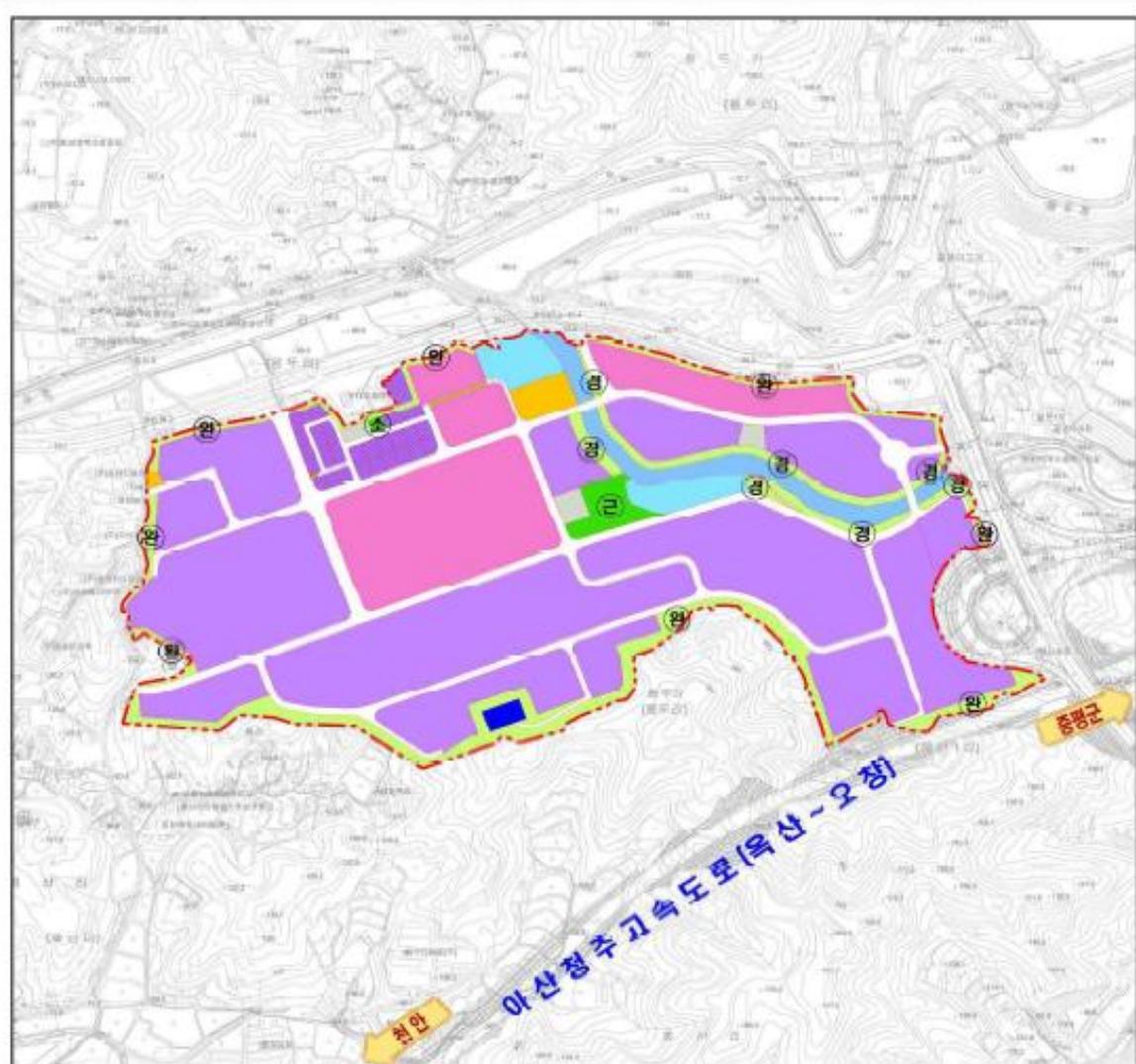
- 가)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 나)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관계기관 건의
- 다)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붙임 1]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 토지이용계획도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토 지 이 용 계 획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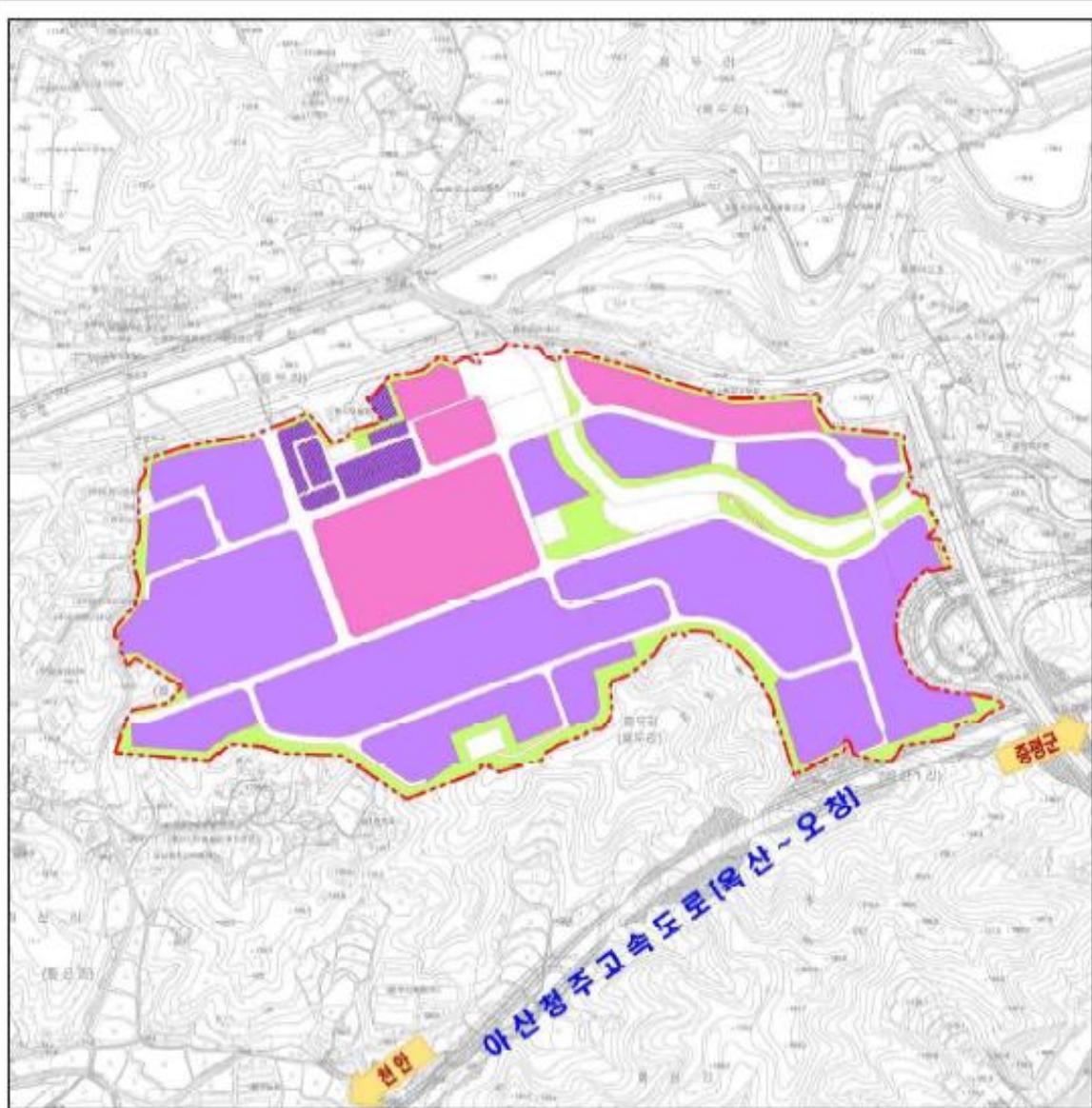
범례

구역계	(@) 완충녹지	공공공지
산업시설용지	(@) 경관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복합용지	배수지	주차장
사무시설용지	소하천	도로
환경시설용지	저류지	
근린공원	(@) 소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Scale : None

0m 100m 200m 400m 800m



■ 용도별 구역도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도별구역도

법
례

- 구역계
- 산업시설구역
- 복합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Scale : None

0m 100m 200m 400m 600m



[붙임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업종배치계획도

